

(년 귀속) 성 실 신 고 확 인 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③ 주 소	
-------	--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	---------	-----	------	----	---------	-----	------

1				2			
---	--	--	--	---	--	--	--

3				4			
---	--	--	--	---	--	--	--

5				6			
---	--	--	--	---	--	--	--

6				6			
7				8			

7				9			
8				10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illegible][illegible][illegible]

3. 확인내용	
---------	--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 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히 확인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작성방법 :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

-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하여 작성(단,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
- ② 소득별(부동산임대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로 첨부서류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의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 또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③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

<첨부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1. 사업장 현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 사업장 등록사항, 나. 사업장 기본사항의 표양식을 하단에 복사하여 작성

가. 사업장 등록사항

상 호		업 종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나. 사업장 기본사항

소유구분	건 물		건물면적		임차 보증금	월 세	종업원수	차 량
	지하층	지상층	바닥면적	연면적				
자가·타가	층	층	m ²	m ²	천원	천원	명	대

* 사업장 기본사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가. 주요 매출처(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1.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 2.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나.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 주요 유형자산 명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자산내역 (품명)	수 량	취득가액	연간 리스료	취득일

- * 작성대상 : 1.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차량운반구는 제외)
2. 리스자산인 경우 모두 작성하고, 자산내역란에 금융리스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

라.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차입처	차입금 용도	차입금액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1. 차입금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입금은 작성 제외
2.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매입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3. 수입금액 검토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총수입금액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			사업장현황 신고분(③)	차이금액 [①-(②+③)]
	소계(②)	과세분	영세율분		
차이원인					

* 총수입금액(①)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의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조정 후 총수입금액이 아님)

나. 매출증빙발행 현황

(단위 : 천원)

총수입금액 (①)	매출증빙발행 금액(②)						차이금액 (①-②)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선불 직불(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	지 로 (GIRO)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차이원인							

1. 총수입금액(①)은 상기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의 총수입금액(①)과 일치하여 작성
2. ㉠과 ㉡, ㉢,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 ㉣,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며, ㉤와 ㉠, ㉡, ㉢, ㉣,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3. 지로(GIRO)(㉤)는 학원사업자가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수납한 금액에 한하여 작성
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총액을 기재
5.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 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봉사료 발생 사업자만 작성)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공급가액 (공급대가)(①)	봉사료 (②)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분의 20 초과 봉사료(③)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 (④)	차이금액 (④ - ③)
차이원인				

① :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를 기재

②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총액

③ : ②번 봉사료 내역 중 봉사료 가액이 공급가액(공급대가) (①번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총액

④ : ③번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총지급액의 합계

2)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①)	지급명세서 금액 (②)	차이금액 (② - ①)
차이원인		

① :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

②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중 봉사료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 합계

3) 연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과세유흥장소만 작성)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①)	개별소비세 신고과표 (②)	환산과표 (③=②×1.13)	차이 (③ - ①)
차이원인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가. 표준손익계산서¹⁾ 항목

(단위 : 천원)

항 목	당기 계상액	적격증빙 ²⁾ 수취 의무 제외		적격증빙 수취 의무			
		건당 3만원이하	기타 ³⁾	계	적격증빙	적격증빙 외의 증빙	증빙불비
①당기매입액							
②의약품비							
③복리후생비							
④여비교통비							
⑤임차료							
⑥보험료							
⑦수선비							
⑧접대비							
⑨광고선전비							
⑩운반비							
⑪차량유지비							
⑫지급수수료							
⑬판매수수료							
⑭소모품비							
⑮인적용역비							
⑯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⑰영업외비용							

- 1)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은 다음 페이지의 나. 표준원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표준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각 항목 비용 외의 비용만 표준손익계산서에 기재
- 2) 적격증빙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각 호에 따른 신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각 호·제84조제4항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함

<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지급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당기 계상액(①)	비과세· 과세대상제외 ¹⁾ (②)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차이금액 [①-(②+③)]
			계(③)	근로소득 ²⁾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	
급여와 임금 · 제 수 당						
차이원인						

-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2) 근로소득(연말정산) 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나. 표준원가명세서¹⁾ 항목

(단위 : 천원)

항 목	당기 계상액	적격증빙 ²⁾ 수취 의무 제외		적격증빙 수취 의무			
		건당 3만원이하	기타 ³⁾	계	적격증빙	적격증빙 외의 증빙	증빙불비
①당기재료 매입액							
②운 입							
③수선비							
④소모품비							
⑤임차료							
⑥보험료							
⑦복리후생비							
⑧여비교통비							
⑨접대비							
⑩차량유지비							
⑪외주가공비							
⑫기타경비							

- 1) 작성대상 :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 2) 적격증빙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각호에 따른 신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각 호·제84조 제4항 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함

< 표준원가명세서상 급여지급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당기 계상액(①)	비과세· 과세대상제외 ¹⁾ (②)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차이금액 [①-(②+③)]
			계(③)	근로소득 ²⁾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	
급여와 임금 · 제 수 당						
차이원인						

-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2) 근로소득(연말정산) 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단위 : 천원)

계정 과목	매입처					증빙불비 원인
	거래일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금액	거래내용	
계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의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 내역 기재(영수증 등 적격증빙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가. 사업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인건비 제외)

(단위 : 천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거래금액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나. 대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법인과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거래금액

*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포함) 지급명세

(단위 :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사일 (퇴사일)	담당 직무	지급액	비과세· 과세대상 제외 ¹⁾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²⁾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2)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7. 차량운영현황(업무용에 한함)

(단위 : 천원)

차종	배기량	차량번호	취득일	보험계약서의 소유자	용도	취득금액

* 보험계약서의 소유자가 사업자 본인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작성

8.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사업용 계좌		기초 잔액	기말 잔액
	개설은행	계좌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사업용 계좌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 가능

<첨부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항 목	특 이 사 항	비 고
사업현황		
수입금액		
적격 증빙 비용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 적격증빙 없는 비용에 대한 내역 누락 여부>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인건비	(예시)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재학, 해외 유학 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예시) • 사업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 사업규모·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	
통신비	(예시) • 가족·친척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복리후생비	(예시)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 가족 및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접대비	(예시)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이자비용	(예시)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예시)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건물관리비	(예시)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지급수수료	(예시) • 종업원의 봉사료와 관련하여 계상된 카드수수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첨부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구 분		확인내용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비 고
수입 금 액 확 인	공 통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하는 거래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용계좌외 친·인척,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업 종 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입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의료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료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1.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